이웃과 인사합시다.
Greet Our Neighbors with a Smile
성북마을공동체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

2013.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설명회

2013년 2월 22일(금) 15:00~17:00
성북구청 4층 아트홀

sb 성북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Seongbuk Community Regeneration Center

목차

□ 2013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계획 안내 3

□ 별첨 - 공모사업 신청서 등 11

□ 참고자료 -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추진계획 안내 ... 38

2013.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계획 안내

Ⅰ 목표 및 개요

■ 사업목표

●

◪ 분	사업◪분	사 업 용
공모시기	정기공모	- 연간 1회(상반기) - 접수기간 : 2013. 2. 25 ~ 3. 27(수)
	수시공모	- 주민협의체 신청사업, 도시아카데미 연계사업, 지정공모사업 등 - 접수기간 : 2013. 3. 30 ~ 6. 31(5월 ,6월, 7월 3회 심의)
공모분야	생활환경 개선 (5~6개 마을)	- 놀이터 보수, 쌈지공원 조성, 꽃밭, 안 시설 등 편의시설, 녹지공간 조성 - 자전거도로, 도로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 - 꽃길, 차없는 거리 등 보행환경 개선 - 벽화 그리기, 담장 허물기, 간판 정비 등 경관 개선 -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주거환경 개선 - 마을도서관, 북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기타 사업
	주민 공동체 형성 및 복원 (16~18개 마을)	- 생활실천 프로그램 : 에너지절약, 텃밭 가꾸기, 벼룩시장, 목공교실 등 - 자연생태, 역사, 문화·예술 등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주민교류 프로그램 : 마을축제, 마을도서관/북카페 운영, 재능기부 (지역화폐), 청소년 사랑방 등 - 돌봄 · 육아 · 복지 프로그램 : 품앗이 돌봄/육아 등 - 지역경제 활성화 : 마을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육성 교육, 시장상인 동아리 운영, 캠페인 및 공동행사 등 - 기타 주민 공동체 형성에 해당하는 활동, 기타 사업 등
	지정공모 (5~7개 마을)	- 지역 및 주체 특성별 마을만들기, 테마별 마을만들기 등 ※ ◪체적인 사업분야 및 세부 용은 추후 결정하여 별도 공고함.
지원금액 및 마을수	생활환경 개선	- 건당 최대2,000만원 범위 에서 사업성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5~6개마을 × 5,000~20,000천원이 = 80,000천원
	주민 공동체 형성 및 복원	- 건당 최대1,000만원 범위 에서 사업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16~18개마을 × 700~10,000천원이 = 70,000천원 ※ 마을의제 찾기 위한 워크숍 등은 700~1,000천원이
	지정공모	- 건당 최대1,500만원 범위 에서 사업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5~7개마을 × 7,000~15,000천원이 = 50,000천원

Ⅱ 공모사업관련 주민교육

■ 1차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3. 2. 22(금) 15:00~17:00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 주 관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참석인원 : 150명 외(관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 관심주민 등)
- 주요 용

▷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2012년도 추진사례,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설명

▷ 공모사업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 사전교육 안 및 교육접수

▷ 공모사업 추진일정 등

■ 2차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3. 3. 08(금) 15:00~17:00
- 장 소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종암로25길 29/ 종암동80-8 사회적기업허브센터 3층 교육실)
- 주 관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참석인원 : 50명 외(관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 풀뿌리단체, 관심주민 등)
- 주요 용 : 1차 설명회와 용은 같음

■ 사전교육 시행

- 목 적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전 마을만들기 철학 공유, 마을의제 설정 및 제안 사업 기획에 도움을 주고, 공동의 주제는 협업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듦
- 대 상 : 2013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 기 : 2013. 3. 16 (주중반 6시간, 6시간)
- 인 : 200명 (마을별 10명 이 20개 마을)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평생학습 교육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내　　용

▷ 마을공동체 관련 이론강의

▷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워크숍 : 그룹별 또는 테마별 4~5개 마을

▷ 마을의제 설정 및 제안 설명자료 작성

- 접수기간 : 2013. 2. 22 ~ 3. 8 (18:00까지) 설명회 당일 현장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E-Mail sbcenter9501@naver.com 접수)

Ⅲ 청자보재자6된업상법20회-하로교2별업해사0법지소선 사업공모

신청자격

■ 신청 시 유의사

- 1개 단체당 1개 활환경 개선사업이나 주민 공동체 형성 및 복원사업에 신청한 사업의 컨소시엄단체는 참여할 수 있음)
- 사업 성격·규모 원
- 총사업비의 5% (현물 또는 금전부담 원칙)
- 생활환경개선사 모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마을기업 등과의 계약을 ~~하여 추진~~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정기 공모 : 2013. 2. 25 ~ 3. 27

  ▷ 수시 공모 : 2013. 3. 30 ~ 6. 31

- 접수방법 : 성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E-Mail (sbcenter9501@naver.com) 접수

  단, 대표자 직인 날인된 신청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직접방문제출(종암로 25길 9)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근무시간(18:00)이 E-Mail 도착분만 접수 인정함.

※ 접수요건 미 충족시 서류일체 반려하며, 보완후 수시공모 접수

■ 추진절차

Ⅳ 지원

사업위원 선

- 1차 심사 : 심 활환경개선사업에 한해 현장심사)
- 2차 심사 : 단답

심사기준(안

- **1차 심사**
  - ▷ 입지여건, 사
  - ▷ 서류와 현장
- **주민참여도**
  - ▷ 지역여건 및 여부
  - ▷ 사업계획 수 정도
  - ▷ 마을만들기 참여시킬 계획의 체성
- **사업의 실현**
  - ▷ 주민 자부담
  - ▷ 주민주도 사 위한 주민 참여자들의 체적 역할 분담 여부
- **사업의 효과**
  - ▷ 사업의 적합 효과
  - ▷ 사업시행에 활환경의 개선, 주민편익 증진 여부
  - ▷ 지역주민 공 의 정체성, 유대감 강화 및 다수 주민이 수혜를 받는지 여부

심사결과 공고

- **공고일자 : 4월 19일(금)**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방법 : 성북구청 및 성북마을 홈페이지 공고, 대표자 개별 통보**

V

사

- 이

〈협약

- 사 을 것.
- 지 을 개설
  ※ 개설
- 거 발급받아 사용
- 사 어 원금을 즉시반환 조
  ▷ 예산집
  ▷
  ▷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를 을 때

- 통 (단체명의 ~~장 신규개설~~)

사

- 중 사업 착수 후 2개월 이 (단기 사업의 경우 제외)
- 최 **정산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5일 이
  ▷
  ▷ 1부 : 지출결의서, 지출증빙 서류(원본)
  , 세금계산서, 입금증, 강사확인서 등 지출 증빙자료)
  ▷ ~~장사본 1부 : 최초 지원금 입금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출납 역 전체~~
  ▷ 기타 사업 결과물 : 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 자료 등

■ 지원금 지급 시기

- **500만원 이상 지원사**

  ▷ 사업협약 체결 및 신규 ~~금 결재전용카드 발급 확인 후 10일 이 50% 지급~~

  ▷ 중간보고서(추진현황) 10일 이 잔여 지원금 50% 지급

- **500만원 미만 지원사**

  ▷ 사업협약 체결 및 신규 ~~장 개설,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발급 확인 후 10일 이 100% 지급~~

VI 추진일정

- ■ 2013. 2. 22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1차 주민설명회 개최
- ■ 2013. 2. 25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공고
- ■ 2013. 3. 08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2차 주민설명회 개최
- ■ 2013. 3. 14(목),15(금)/16(토) : 사전교육 시행 (주중반/주말반)
- ■ 2013. 2. 25 ~ 6. 31 : 공모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2013. 4. : 공모 사업 심사 및 선정
- ■ 2013. 4. : 사업협약 체결 및 보조금 회계처리 교육
- ■ 2013. 5. ~ 12 : 사업시행
- ■ 2013. 12. : 사업정산 및 시행결과 평가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별첨 자료

□ 목　　차

1. 공모사업 사전교육 신청서
2. 공모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공모사업 중간보고서
4. 공모사업 최종보고서
5.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6. 지원금 예산편성 원칙
7. 고유번호증 개설방법
8. 정관 · 규약(예시)
9. 성북구 마을만들기 카드발급 방법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 「지원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별첨 1>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사전교육 신청서

	⑯ ⑰ ⑱ ⑲ ⑳		

2013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귀하

※ 교육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2>

2013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단 체 명		※ 컨소시엄 단체 및 컨소시엄 대표단체 명시	대표자	※ 기획공모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대표단체 대표자로 작성
단체소재지			연락처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유형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	
		지정공모사업		
	사업장소			
	사업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신청예산		총계 _____천원	지원금_____천원 (%)	자부담_____천원 (%)
담당 및 연락처		담당자		담당자 직급
		담당자 핸드폰		담당자 E-mail
		단체 전화번호	(혹은 대표자)	단체 팩스
		단체 주소	(우편번호: -)	
		홈페이지	※ 블로그,카페 등	

위와 같이 2013년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모임 소개서 또는 주민참여자 명단 1부(정관, 규약 등 포함)
3. 주민자치위원회 검토의견서 1부
4. 교육이수자 이수증서 사본 1부

성북구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⑴ 사업지역 소개하기

- 사업지역의 일반적 특징(주거형태, 인구구성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 사업 지역의 사업 대상층 수
- 사업지역에서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 종류
- 사업지역 유사 사업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소개
- 기타 사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지역특성 등

⑵ 우리 마을공동체(추진모임/조직) 소개하기

- 모이게 된 동기
- 진행하고 있는 활동 소개 등

⑶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 사업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 필요성
-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 조사결과)
- 경험적 근거
- 기타(해당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4 사업 목적과 세부 목표

(1) 2013년 사업목적과 세부목표

세부 사업명	목적	세부 실행 목표	사업실행 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

*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주민모임 만들기'는 반드시 목적에 있어야 합니다.

5. 세부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6. 지역자원 협력 방안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현황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전문가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기타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 '현황'에서는 ■표 해주세요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7. 공동체 운영 방안

(1) 의사결정기구 구성 방안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의사결정기구 구성 계획을 기록

(2) 자부담금 마련 방안

※ 자부담금 마련 방안 및 공동체 운영 자체(지원금 제외) 소요 운영비 마련 방안

8. 기대효과

9. 예산계획

(1)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원 (%)**

- **보 조 금 :** **원 (%)**
- **자 부 담 :** **원 (%)**

(2) 세부 사업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원(100%)	원(%)	원(%)	
세부사업명	소 계				
	인 건 비	원(100%)	원(%)	원(%)	
	기 타				
세부사업명	소 계				
	기 타				
세부사업명	소 계				
	기 타				
공통예산	소계				
	사업진행비				
	외부활동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자부담	
	업무진행비			자부담	
	기타				

주관 단체 모임 소개

단 체 명	
대표자명	
대표자약력	※ 대표자의 주요약력 및 소개내용을 3개 이상 입력해 주십시오.
조직현황	운영진 수 : 명 회원수 : 명
구성연월일	
주요연혁	※설립연원일 포함
주요사업	
주 소	(-)
연 락 처	전화번호 : 핸드폰 :
홈페이지	※ 카페 및 블로그가 있는 경우는 입력해 주십시오.
이 메 일	※ 단체의 대표메일 또는 담당자 메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2013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사업명 :)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담당 직무
	성 명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서 명	
1						대표자
2						간 사
3						총 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담당직무는 참여 주민 개개인별로 업무분장 하여 작성

주민자치위원회 검토 의견서
(마을 만들기 사업)

사 업 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사 업 비	총 원	보조금 : 원(%) 자부담 : 원(%)
제안사유		
검토의견		

2013. . .

( )동주민자치 위원장 (인)

<별첨 3>

2013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중간보고서

단 체 명		대표자	
단체소재지		연락처	
사 업 명			
사업유형	☐ 생활환경개선사업 ☐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사업 ☐ 기획공모사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업대상			
사업목적			
사업추진 현황 (요약)	당초계획	추진실적	
이후 계획			

예산현황	총사업비	약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원	원	원	원	%

위와 같이 2013년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중간평가를 요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별첨 4>

2013년 성북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최종보고서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2. 사업기간 :

3. 사업장소 :

4. 사업대상 :

5. 추진 용

사업 제목	일정/일시	세부추진 용
	~	① 세부사업 용 ② 사업장소 ③ 참석대상 및 인원 ④ 홍보 및 추진방법

6.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1) 사업참여자 변화 수, 각종 네트워크, 모임 발전 정도

2) 사업 진행과정

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이야기)

② 사업을 진행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던 사건, 어떻게 풀어갔나?

3) 성과

①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전? 하고난 후? 어떤 변화가 왔나?

② 그래서 어떤 희망을 보았나? 무엇을 꿈꾸게 되었나?

4) 이해관계자 소감 (3인 이상)

※ 대표 소감 및 참가자 인터뷰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이용하는 수혜자 (예시: 마을카페 – 손님, 마을도서관 – 참여어린이, 마을축제 – 참가자 등)

7. 이후 계획

8. 진행사진

9. 사업결과물

사진, 영상, 보고서, 간담회 자료, 설계도면 등

<별첨 5>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 전체 신청양식 작성 및 글자체, 크기 등

ㅇ 신청서식 모두 작성제출

ㅇ 내용은 한글 굴림체 12p로 작성(구청홈페이지 다운로드 할 것)

ㅇ 용어의 경우, 전문용어 외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 사용

2. 지원신청서

ㅇ 신청서식과 다르지 않게 작성

ㅇ 단체명 대표자는 공식명칭 및 실명기재 : 지정공모사업은

ㅇ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직인 반드시 찍어야함

3 사업계획서

ㅇ 사업기간은 종료는 사업신청 익월~12월 31일로 명시 (단, 행사성 사업은 행사 종료일 명시)

ㅇ 사업대상 지역은 행정구역 및 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

ㅇ 주요참여 구성원 : 학생 ㅇㅇ명, 주부 ㅇㅇ명 등 구체적으로 명시, 전문가의 경우는 실명 기재

ㅇ 사업효과는 지원사업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여 명확하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업내용은 별도 작성 가능
세부사업별, 추진일정별 작성

4. 사업예산서

ㅇ 사업완료 시 정산서 제출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업예산서 작성
<u>※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승인 없이 사업예산 변경할 경우 반환 조치</u>

ㅇ 캠페인세미나 등 프로그램명과 인쇄비인건비강사료 등 항목별로 작성

ㅇ 산출근거는 수량단가 등 구체적 명시

ㅇ 강사비, 회의비, 토론비 등 인건비 부분은 예산작성 지침 참조]

<별첨 6>

지원금 예산편성 원칙

1. 지원금 예산편성원칙

① 지원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제시하여야 함

③ 지원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원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난방비 등 단체운영 경비

※ 사업수행관련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지원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⑥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선정결과 공표 시 서식 통보)

⑦ 지원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자문비	특별 강사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1시간 220,000원 초과 매시간당 130,000원 (최대 350,000원)	
	1급 강사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1시간 18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최대 280,000원)	
	2급 강사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4·5급 공무원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3급 강사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1시간 70,000원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0,000원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2시간 미만	5인이하 27.5만원 6~10인 40만원 11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2시간 이상	5인이하 35만원 6~10인 50만원 11이상 70만원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단순인건비	1인 / 1일	3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13,000원	
교통비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20,000원 실비 6,000원 25,000원	

※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용 및 회계처리 기준은 사업 선정후 별도 안내 예정

<별첨 7>

고유번호증 개설방법

1. 법인 단체 신청서 작성

1) 대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 주소지, 자택전화번호, 회사, 회사전화번호, 대표선임일)
2) 단체(단체명, 단체주소지, 단체전화번호, 창립일)

2. 대표자 가지 못할 경우 위임장 작성

1) 대표자 인감도장 지참
2) 위임민원사무명 :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3.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1) 단체 운영규정(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선임 입증자료(조직표, 총회 회의록) 1부.
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별도 사무실 없을 경우 대표자 자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5) 방문자 신분증·도장 지참

4. 접수증 수령

5. 5 ~ 10여일 후 전화 확인 후 접수증 가지고 세무서 접수담당 방문

6. ① 고유번호증,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등 3부 수령

7. 통장 개설 및 관련업무 개시

1) 통장은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 통장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2) **보조금 통장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반드시 우리은행 신규계좌 개설**과 자부담 통장은 **시중은행 계좌개설**
3) 통장 개설 후 보조금 통장은 잔액 0원으로 맞추고, 자부담 통장은 자부담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별첨 8>

000

2000년 월 일 제정

제1장 총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0000000(이하 00회)”라 한다.

제2조(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시 성북구 00구 000동 000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000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사업 및 활동)

본 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000동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을 위한 사업

2) 000동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3)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2) 신입 회원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조 직

제6조(임원)

1) 본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1명, 총무1명을 둔다.

2) 본회의 임원은 전체 모임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 관리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0[redacted]부 동수일 때는 대표에게

[redacted]한다.

[redacted]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제4[redacted]

제11[redacted], 시 보조금, 기타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12[redacted]영 운용은 성북구의[redacted]

[redacted]재정 [redacted]

부 [redacted]

1조.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조. 본회의 정관은 월 일 총회 결의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주의) 정관(규약)의 제정일과 창립 총회 회의록의 날짜가 동일해야 합니다.

<별첨 9>

마을공동체 체크카드 발급 방법

1. 대표자 방문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2.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3. 대표자 도장

2. 대리인방문시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2.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3. 대표자 도장
4. 방문자 신분증

우리은행 담당 : 김세연 과장 924-4161(내선223) 행정 1713 팩스 924-6291

<별첨 10>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867호[시행 2011.10.2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마을만들기"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4. "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비영리단체등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 사업은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가꾸고 정비하는 활동에 기본적인 가치를 둔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한다.

2. 주민은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다.
3. 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협동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6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북구 마을만들기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
2. 행정·재정적 지원체계 및 추진체계
3. 마을만들기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적 활용방안
4.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에 대한 세부내용
5.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을 위한 도시아카데미 운영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 성격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예산지원 규모 및 사업범위
2.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신청) ①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구청장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동에 걸쳐 추진할 사업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의견을 들은 후 구청장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조정 및 선정)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구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주민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제10조(사업분석 및 평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진단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분석·평가·연구·보고
2.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계획수립 및 실행 지원
3.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
4.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견학 지원
5.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6.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17조에 따른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제17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심사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된 성북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위탁(재위탁 포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마을만들기 업무 담당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1/3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제2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해촉) ①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추진계획 안내

아이키우기, 동네안전 지키기, 일자리 등 생활현장의 문제 마을공동체로 풀어간다

- 서울시, 22개 사업 222억「2013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발표 -

- 아파트관리비 인하, 텃밭가꾸기 등을 통해 아파트마을공동체 적극 지원
- 다문화, 상가, 한옥 등 서울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 주민 제안에 따라 신축적이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도 가능
- 지역도서관, 마을북카페, 마을예술창작소 등 문화인프라를 마을인프라로 적극 활용
- 여러 사업간 연계, 참여주체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주민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
-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상담을 제공하고, 회계처리도 지원
- 마을별 현황, 스토리까지 한눈에 보는 온라인 맵핑시스템 구축해 칸막이 없앤다

□ 서울시가 22개 사업, 총 222억 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13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발표, 2월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02-385-2642: 이웃사이)'에서 연중 공모 접수를 받고 본격적인 현장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주민 의사에 따라,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성격의 단체, 모임의 신청을 받아 시가 사업을 심사,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시는 2012년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주력한데 이어, 금년부터는 조성된 기반을 토대로 시민생활 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들인 아이 키우는 문제,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안전문제, 일자리 문제 등을 주민들 스스로 힘을 모아 함께 풀어나가는 마을공동체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서울 주거유형의 58%에 달하고 있는 아파트마을공동체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민들이 에너지 절감, 회계 투명성 개선 등을 통해 아파트관리비를 인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아파트 텃밭이나 작은 도서관 등도 활성화해서 주민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시 각 부서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현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 지원함으로써 신축적이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아울러, 시는 '마을상담' 제도를 도입, 의지는 있으나 마을공동체의 개념이 생소해 주저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민제안 방법, 의제 발굴, 지원 절차 등 사업추진 전 과정을 컨설팅 해준다.

□ 주민들이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회계처리가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점을 반영해 1마을현장 1회계지원을 원칙으로 '자치구별 회계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미리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연간 사업 공모 일정도 공개했다.

□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모든 지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펼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적 요소를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마을 현장의 주민수요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 올해부터는 마을과 밀착돼 있는 자치구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자치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사업별 심사선정위원에 자치구 사업부서장 1인이 반드시 참여한다.

○ 또, 시에서 사업 선정할 때도 '자치구 의견서'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공간조성 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자치구를 통해 사업이 집행된다.

□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금년에는 지난해에 축적된 민·관 협력관계를 토대로 마을현장 주민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칸막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이 잘 키우고 안전과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적극 지원>

□ 우선, 서울에서 마을공동체의 시발점이 된 보육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육아 활성화' 2개 사업에 총 16억 원을 지원한다.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지역 내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들의 모임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0개 모임(단체)에 대해 각 5백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상반기 공모는 2월 22일까지 받는다.

□ ‘공동육아 활성화’사업은 지역 내 문화공간, 주민센터 등 일상생활 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돌봄을 실현,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20개 단체를 지원한다. 운영비, 프로그램비, 시설비 등 연간 3백만 원에서 최대 4천만원 까지 지원한다.

□ 에너지 자립마을’, ‘안전마을 활성화’ 등 생활밀착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총 13억 원을 지원한다.

○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은 시민생활 속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문화를 확산해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 표준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7개소를 포함해서 총 10개소를 선정해, 마을별 최소 8백만 원~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 ‘안전마을 활성화’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재해·범죄 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안전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0개소를 대상으로 1백만 원~2천만 원이 지원된다.

○ 아울러, 원전하나줄이기사업과 마을사업을 연계해서 에너지절감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공통주제가 되도록 에코마일리지사업 등을 마을공동체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아파트 다문화 한옥 상가 등 서울도시 특성을 살린 마을공동체 사업 본격 추진>

□ 아파트에 적합한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및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책꽂이를 분양받은 후 자신의 책을 갖다놓고 서로 빌려볼 수 있도록 하는 「공유서가 사업」, 텃밭 등 도시농업 사업, 공동육아방 운영, 주민간 서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커뮤니티 보드사업 등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에 150여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13억 원을 배정했다.

□ 또한, '다문화 마을공동체', '상가마을공동체', '한옥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억 원이 지원된다.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지역의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간 조성비는 3천만 원까지, 커뮤니티 활동비는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상가마을공동체'는 상가를 중심으로 상인 · 주민 · 이용고객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5개 상가모임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한옥마을공동체'는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9개 마을에 대해 시설비, 프로그램 개발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서관, 북카페 등 지역문화인프라를 마을공동체 활동 인프라로 적극 활용>

□ 작은도서관, 마을북카페,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휴카페 등 지역 내 문화인프라가 지역주민이 모여 공동체 활동을 하는 중추 거점이 되도록 지원 한다.

□ 서울 각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주민 생활 현장 가까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748개소), 마을북카페(30개소), 마을예술창작소(23개소), 청소년 휴카페(17개소) 등의 공간이 주민사랑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아울러 이런 시설의 확충에도 힘쓴다. 여기엔 총 51억 원이 투입된다.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은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주도의 문화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개소에 대해 시설비 및 운영비로 2천만 원~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 **'마을북카페'** 조성은 기존 작은도서관이나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밀착형 북카페로 조성해 마을공동체 구심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는 3천만 원 이내, 운영비는 1천 6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청소년 휴카페'** 조성은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규모 문화휴식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운영비 용도로 연간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턱없이 부족한 주민이 모일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과 연계해 공동체 활동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성 강한 마을기업에 임대보증금이나 사업비 지원, 마을형 청년일자리 발굴>

□ '마을기업' 지원, '청년마을' 활성화 사업에 총 65억 원이 투입된다.

□ '마을기업' 지원은 성장단계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마을기업을 선정해 공간임대보증금 또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간임대보증금은 45개소에 최대 1억 원을 5년 내 상환조건을 두고 지원하며, 사업비는 39개소를 대상으로 1년차 30개소 각 5천만 원, 2년차 9개소 각 3천만 원을 지원한다.

□ 또한, 마을형 청년일자리 모델을 발굴·지원해 지역기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마을' 활성화 사업은 시범적으로 4개팀을 선정하여 교육·컨설팅·멘토쉽 활동을 통한 마을일거리 사업화에 총 2억 3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축적이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도 가능>

□ 시는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현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사업'과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며 총 24억 원이 투입된다.

○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은 주민들이 공간을 확보한 후 공간조성에 필요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유제안 방식으로 15개소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공동체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함께 모여서 추진하는 활동으로 주민 제안을 심사해서 지원한다. 자유제안과 지정제안 방식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마을북카페, 청소년휴카페 등 공간 조성과 공동육아 등 초기부터 함께 연계추진>

□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연계하면 효과가 커지는 사업에 대해선 초기 단계부터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예컨대 마을북카페 조성사업, 청소년 휴카페 조성사업 등의 공간조성 사업과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등의 주민활동 지원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조성은 지역주민 욕구가 큰 경우에 한해 공동체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을 사전 진단한 후 이뤄진다.

○ 특히 금년에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예비 대상자를 선정**,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통해 공간 활용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마을상담, 1자치구 1회계지원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마을사업 참여 가능>

□ **올해는 '마을상담'제도를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마을현장 지원이 보다 쉬워지고 체계화된다.**

○ 마을상담 제도는 주민제안 방법이나 지원절차 등 전반적인 상담을 사업 초기에 지원하고, 사업 추진 과정 중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각각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심층 상담해 주는 제도다.

○ 이렇게 상담된 사례들은 타 마을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소통창구를 통해서도 공개한다.

□ **또, 마을현장의 가장 큰 애로인 지원자금의 회계처리도 지원한다.**

○ 우선, 자치구 전산교육장을 활용해 실습 위주로 회계교육을 사업비 교부 전에 실시하며, 온라인 동영상 강의도 제작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배포·지원한다.

○ 아울러 각 지역의 회계전문가나 퇴직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재능기부를 통해 자치구별 '회계지원단'을 구성해서 마을 주민들의 사업비 정산 등을 도와준다.

□ **주민이 신청을 하면 종합지원센터는 신청내용과 주민 커뮤니티 형성정도 등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그 내용을 반영해 시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마을공동체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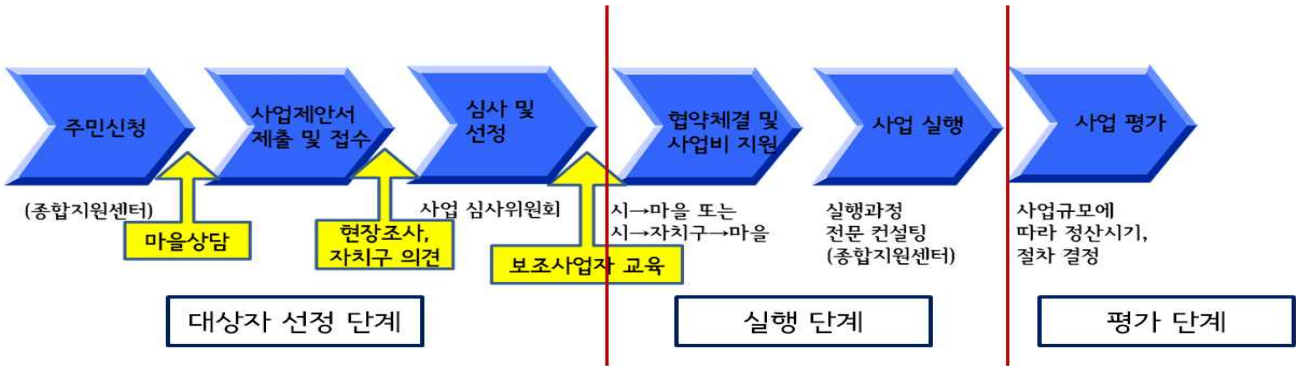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 초기 단계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안착 견인>

□ **이 외에도 시는 초기 단계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주도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반주민과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은 강사를 파견해 주민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4월~10월까지 50회 운영된다.

○ 주민들이 마을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우리마을프로젝트 촉진교육'이 제공되며. 4~8월까지 6회 240명에게 지원된다.

○ 또한, '초보·전문 활동가 양성'과 '청년 활동가 양성'을 하게 되는 마을활동가 자라남 학교'가 열리며 연중 5회 340명이 교육받을 수 있다.

○ 아울러, 각 자치구의 주민교육 사업인 마을아카데미 사업에도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그 외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과 '우리마을프로젝트'사업에 6억 원과 3억 8천만 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 시민 누구나 자기 마을을 소재로 마을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장비, 스튜디오, 활동비 등을 지원하며, 마을미디어가 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마을미디어 축제의 개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우리마을프로젝트'도 시행되며. 총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총 122개소에 대한 계획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의 욕구와 마을 발전단계에 따라 초기 씨앗단계(3인 이상 주민 모임)는 80개소 150만 원까지, 도약기 새싹단계(복수의 주민모임)는 40개소 5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다 종합적인 마을계획의 수립도 2개소 지원된다.

<마을별 현황, 스토리까지 한눈에 보는 온라인 맵핑시스템 구축해 칸막이 없앤다>

□ 또, 시는 마을별 사업추진 내역, 인·물적 자원보유 현황, 마을활동가 활동 현황, 마을스토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인 '통합관리 커뮤니티 맵핑시스템'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에 6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마을별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마을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아이 잘 키우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며, 일거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생활밀착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서울시민의 삶 가운데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이 확산되고 '함께 사는 재미'가 넘치는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 주민제안사업 : 16개 사업 19,725백만원

연번	사업명	추진부서		사업예산 (백만원)
		서울시	성북구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과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과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과	
		서울도서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과	홍보담당관	
		한양도성도감	도시계획과	
		녹색에너지과	환경과	
		도시안전과	자치행정과	
		공동주택과	주택관리과	
		마을공동체담당관	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담당관	사회적경제과	

□ 기반조성사업 : 6개사업 2,478백만원(서울시 자체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사업예산 (백만원)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박람회 개최	〃	
	마을공동체 교육	〃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	
	주민제안사업 현장조사 등	〃	

’1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내역

사 업 명	사업 개요	상세사항 (사업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상세사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상세사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상세사항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Seongbuk Community Regeneration Center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종암동)

전화 : 02-927~9501 / 팩스 : 02-927~9502

대표이메일 : sbcenter9501@naver.com

홈페이지 : www.sbnet.or.kr